



4 주소(주거지), 세대의 변경 수속

주민등록한 주소(주거지)나 세대구성에 변경이 있을 때 시구청촌의 관청에서 수속을 해야 합니다. 신고를 할 기간이 각각 정해져 있으므로 늦지 않도록 신고를 합니다.

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세대주가 시구청촌의 관청에서 신청을 합니다.

4-1 주소(주거지)를 변경했을 때

중장기체류자는 주소가 바뀌었을 때 「전출신고」 「전입신고」 「전거신고」가 필요합니다. 그것과는 별도로 「주거지의 변경신고」도 필요하나, 전입신고 또는 전거신고를 할 때 주소(주거지)가 바뀌는 세대 전원의 체류카드를 제시하면 「주거지 신고서」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 아래에서는 기본적인 수속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.

(1) 전출신고

주소를 옮기기 전에 살고 있는 시구청촌의 관청에서 「전출신고서」를 내십시오. 「전출신고」를 하면 「전출증명서」가 발행됩니다.

신고할 수 있는 사람	필요한 서류 (예)	제출처 / 문의처	언제부터 언제까지	수수료
1 본인 또는 세대주 2 본인과 같은 세대의 사람 3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	1 전출신고(용지는 시구청촌의 관청에 있습니다) 2 관청의 창구에서 신고하는 사람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3 <대리인이 신고할 경우> 전출하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	주소(주거지)의 시구청촌 관청 (우편으로 신고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)	주소(거주지)를 옮기기 전	무료

다언어 생활정보



A 새로운 체류관리제도 · 외국인주민기본대장제도 (※2012.7.9 부터의 내용입니다)

▶ A 새로운 체류관리제도 · 외국인주민기본대장제도 TOP 으로

(2) 전입신고 · 주거지의 변경신고

살고 있는 시구정촌에서 다른 시구정촌에 주소(주거지)가 바뀔 때 주소(주거지)를 옮긴 날로부터 14 일 이내로 이사한 곳의 시구정촌의 관청에서 「전입신고서」 및 주거지 변경신고를 하십시오.

신고할 수 있는 사람	필요한 서류 (예)	제출처 / 문의처	언제부터 언제까지	수수료
1 본인 또는 세대주 2 본인과 같은 세대의 사람 3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	1 전입신고(용지는 시구정촌의 관청에 있습니다.) 2 전입하는 사람 전원의 체류카드 (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등록증명서도 포함) 3 <기존의 세대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이외의 사람은>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4 전출증명서(지금까지 살고 있던 시구정촌에서 발행) 5 관청의 창구에서 신고하는 사람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6 <대리인이 신고할 경우> 전입하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	신주소(주거지)의 시구정촌의 관청	주소(주거지)를 옮긴 날로부터 14 일 이내	무료

(※) 신주거지는 전입하는 곳 시구정촌의 관청에서 체류카드에 기재해야 합니다. 체류카드를 분실한 경우에 증장기체류자는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체류카드의 재교부신청을 하십시오.

다언어 생활정보



A 새로운 체류관리제도 · 외국인주민기본대장제도 (※2012.7.9 부터의 내용입니다)

[▶ A 새로운 체류관리제도 · 외국인주민기본대장제도 TOP 으로](#)

(3) 전거신고 · 주거지의 변경신고

살고 있는 시구정촌 내에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그 시구정촌의 관청에서 「전거신고서」 및 주거지 변경신고를 하십시오.

신고할 수 있는 사람	필요한 서류 (예)	제출처 / 문의처	언제부터 언제까지	수수료
1 본인 또는 세대주 2 신주소에서 본인과 같은 세대의 사람 3 1의 사람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	1 전거신고 (용지는 시구정촌의 관청에 있습니다.) 2 전거하는 사람 전원의 체류카드 (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등록증명서도 포함) 3 <기존의 세대에 추가되는 경우, 세대주 이외의 사람은>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4 관청의 창구에서 신고하는 사람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5 <대리인이 신고할 경우> 전거하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	주소(주거지)의 시구정촌의 관청	주소(주거지)를 옮긴 날로부터 14일 이내	무료

(※) 신주거지는 전거한 시구정촌의 관청에서 체류카드에 기재해야 합니다. 체류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체류카드를 재교부 받으십시오.